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2018.4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번호안내서비스(이하 "번호안내"라 합니다)를 이용할 때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2조(서비스의 종류) ① 번호안내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1. 기본서비스 가. 114안내	상호, 인명(이하 “명칭”이라 합니다) 등의 명칭, 이용번호에 의하여 번호 및 상호, 주소(이하 “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안내 받는 서비스.
2. 부가서비스	전화의 기본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습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① 제5조의 접속서비스로 번호안내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1통화당 1건의 번호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안내 받고자 하는 제4조 대상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명칭, 소재지역, 영업내용, 이용번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가입자의 상호, 전화번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문의한 명칭이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명칭과 다를 경우 번호 등을 안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문의한 명칭이 상호인 경우 케이티는 읍·면·동, 리, 지번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이하 “상세주소”라 합니다)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2013.5.31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의 상호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세주소 제공에 대해 새로 동의한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문의한 번호를 부가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경우 문의한 번호와 함께 유용한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안내원에게 폭언, 욕설, 헐박, 기타 번호안내와 관련 없는 언행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케이티는 번호안내를 거부할 수 있고 증명자료 수집을 위해 녹취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조(번호안내 대상)① 번호안내는 일반전화, 구내교환전화, 집단전화,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지능망서비스(전국대표번호, 080 등),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타지역번호서비스, 착신전환전용서비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와 번호안내 접속협정을 맺은 타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구내교환전화의 경우는 케이티는 원칙적으로 대표번호를 안내합니다. 다만 구내전화이용 가입자가 구내번호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케이티는 구내번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된 상호명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접속서비스)① 번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접속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전화, 공중전화, 구내전화, 집단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종합정보통신서비스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2. 케이티와 번호안내 접속협정을 맺은 타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6조(서비스 제공시간) 케이티는 번호안내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관리 및 운용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번호안내 대상구역) ① 114접속번호(타통화권의 번호를 문의시 그 지역번호 추가)에 의한 번호안내는 전국을 대상으로 안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번호안내 계약

제8조(번호안내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제4조의 번호안내 대상 서비스의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또는 계약사항 변경시 상호 및 업종, 인명, 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구 번호 포함), 주소 등의 번호안내자료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안내를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번호안내자료에 대한 명칭 확인 등 본인확인 후 번호안내를 승낙합니다. 다만, 정상영업 여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명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케이티는 가입자에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 번호안내를 보류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15일 내 관련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케이티는 해당 번호안내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번호안내자료는 1번호당 1개 명칭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가입자는 번호안내 대상 서비스의 설치장소와 번호안내자료의 안내주소가 다른 경우 이를 케이티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케이티는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안내합니다.

제9조(번호안내 중지 등) ①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번호안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번호안내를 원하지 않아 케이티에 청구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부전산망 등을 통한 조회 결과 변호안내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
 5. 가입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른 설치장소가 안내주소와 다를 경우 케이티에 알리지 않은 경우
 6. 기타 민원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안내가 불가하여 케이티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사유로 변호안내가 중지된 이후 가입자가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변호안내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케이티는 이를 검토하여 변호안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위탁업무

제10조(변호안내업무 등 위탁) 케이티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자(변호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와 업무협정 등을 맺고 제4조 변호안내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2. 변호정보 제공 및 판매
3. 전화번호부(책자, CD-ROM)발행 및 판매
4. 인터넷에 의한 변호안내서비스

제5장 요 금

제11조(요금의 종류)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비스료
2. 부가서비스료

제12조(요금산정)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효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요금은 케이티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요금 월)를 1개월분의 요금(월액요금)으로 합니다.

제13조(안내요금 부과)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기본서비스료를 부과합니다.

1. 문의한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안내원이 문의한 번호를 안내한 때
2. 문의한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게재불요(안내를 원하지 않는)인 경우: 안내원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한 때

② 케이티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된 상호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 제2호의 기본서비스료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별표1]과 같이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합니다.

제14조(요금감면) 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으로서 시내전화이용약관에 의하여 복지용전화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금을 감면 받는 고객의 자격요건은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요금감면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케이티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요금의 반환) 케이티는 케이티가 책임있는 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안내요금을 돌려주거나 다음달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케이티의 책임있는 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케이티는 손해를 배상하며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케이티가 안내한 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며, 케이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 칙(1996년 12. 31 공시 제 50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1년 6.28 공시 제2001-12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년 4.29 공시 제2002-4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3년 공시 제2003-1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3년 공시 제2003-2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4년 공시 제2004- 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요 금 표

1. 기본서비스료

가. 서비스요금(부가가치세 포함)

접속번호	요 율		비 고
(1) 114	정상시간	132원/건당	통화료 없음
(2) 지역번호 + 114	할증시간	154원/건당	

※ 다량안내를 제공하는 경우 안내되는 번호 건당 요금이 부과됨

나. 적용시간

정상시간	평 일 09:00 ~ 18:00
할증시간	평 일 00:00 ~ 09:00, 18:00 ~ 24:00 토요일, 공휴일 00:00 ~ 24:00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부가서비스료(부가가치세 포함)

서비스명	요금
직접연결	110원/건당
간접연결	77원/건당

[별표 2]

요 금 감 면 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시내전화이용약관에 의하여 복지용전화로 지정된 자의 요금	100%
(2) 특수번호(111,112,113,117,118,119,122,125)를 문의한 요금	100%